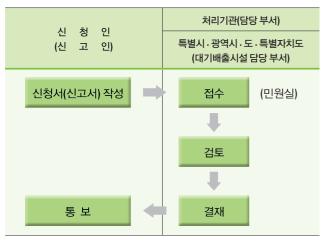


사업장의 신고절차는

-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(신고서) 작성
 -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5조 서식 2에 따라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.
- 업무처리 절차



※ 지자체별 관련 연락처

· 서울: 기후대기과(02-2133-3611) · 인천: 대기보전과(032-440-3503)

· 경기: 환경안전관리과(031-8008-3550)

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은

• LNG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[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8]

구분	증발량 40톤/시 미만 (열량 2,476만Kcal/시 미만)	증발량 40톤/시 이상 (열량 2,476만Kcal/시 이상)
2014.12.31 이전설차시설	150(4) ppm 이하	150(4) ppm 이하
2015.1.1 이후설치시설	60(4) ppm 이하	40(4) ppm 이하

※ 배출허용기준 난의()는 표준산소농도(0₂의 백분율)를 말함

총량제 대상 안내



LNG보일러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

문의사항

• 본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 | T. 044-201-6910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| T. 031-481-1392~4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| T. 032-590-360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LNG보일러의 대기배출시설 및 총량제 대상 안내







LNG 보일러도 대기배출시설 및 총량제로 관리

일정규모 이상의 LNG 보일러 시설이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 시설 및 총량대상으로 관리됩니다.

 대기 배출시설중 보일러란? (대기환경보전법제2조시행규칙5조별표3)
가)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,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.

[산업 및 업무용 보일러 시설의 적용범위]-

사업장내 부지내에서 후생복지(구내식당, 기숙사 난방, 목욕탕, 수영장등)에 해당 되는 일정규모 이상 보일러는 산업용에 포함되며, 업무용 보일러는 영업용(목욕탕, 대형상가 등)과 공공용 보일러를 말함

- 나) 시간당 증발량이 0.5톤 이상 이거나 열량이 309,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, 다만,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.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,800킬로 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를 말한다.
- 다) 가스(바이오가스 포함)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,238,000킬로 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다.

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는

- 적용시기 : 2015년 1월 1일부터
- 신고기간: 2015.1.1~2015.12.31일까지(허가·변경허가, 신고·변경신고)
- 신고대상 : 일정규모이상의 산업 및 업무용 보일러(2015.1.1일 당시 배출 시설의 설치 · 운영하고 있는 자)
- 신고기관 : 서울, 인천, 경기 등 지자체별 해당부서
- ※ 규모 미만 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

동일 사업장에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총 규모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시간당 증발량이 1톤인 보일러 3대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

총량제 및 TMS(굴뚝자동측정기기) 부착대상은

- 총량제 대상은 [수도권특별법 시행령 별표1.2]
- 대기관리권역 내 연간 질소 또는 황산화물 배출량이 4톤을 초과하는 1종· 2종사업장이 해당됩니다.
- ※ 현재 대기관리권역: 서울, 인천(옹진군 제외), 경기도(24개시)
- ※ 확대: 대기3종사업장 및 경기도 권역확대(광주, 안성, 여주, 포천)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완료 후 포함 예정



• TMS 부착 대상은 [수도권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의2]

- 액체 및 기체연료 사용하는 공통시설 중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,238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이 해당됩니다.

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

[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]

- 1.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발생량 =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× 최대 연료사용량
- LNG를 사용 보일러시설의 NOx 발생량 산정은 해당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예시한 방법대로 산정하시면 됩니다.

(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: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)

LNG: 난방 3.70g/㎡, 산업 3.70g/㎡

[발생량 산정사례]

• 시간당 연료사용량 : 1,000N㎡/시

일 가동시간: 20시간연 가동일수: 300일

• 오염물질발생량 합: 22.44톤(2종 사업장)

● 질소산화물 연간발생량

- $= 3.7 \text{g/nm}^3 \times 1,000 \text{nm}^3 / \text{시} \times 20 \text{시} \times 300 \text{일} / \text{년} \times 10^{-6} \text{E/g}$
- = 22.20톤

